

농산물 수출계약에서의 CISG상 계약부적합 및 검사·통지의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박 은 옥

전북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강의초빙교수 경제학박사 김 시 라

전북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경제학 박사 석 준 호

*논문접수 : 2026. 7. 14. *심사개시 : 2026. 7. 22. *게재확정 : 2026. 8. 10.

〈목 차〉

- | | |
|-------------------------------------|-----------------------|
| I. 서론 | 5. Hungarian wheat 사건 |
| II. CISG상 계약부적합과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 6. Fallini cheese 사건 |
| 1. 계약부적합 | IV. 농산물 수출입계약에 대한 시사점 |
| 2. 물품검사와 통지의무 | 1. 계약부적합 판단의 유형화 |
| III. CISG상 농산물 거래의 검사·통지의무에 관한 판례분석 | 2. 검사기준의 차등화 |
| 1. Live sheep 사건 | 3. 통지요건의 구체화 |
| 2. Chicago Prime 사건 | V. 결론 |
| 3. Paprika powder 사건 | 참고문헌 |
| 4. German wine 사건 | |

I. 서론

최근 국제 농식품 교역에서는 수요 확대와 공급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OECD-FAO는 2025~2034년 전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향후 세계 농업생산 증가분의 54%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52381)

다. 한편 FAO의 2000~2024년 농식품 무역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의 농식품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¹⁾ 이는 아시아가 농업생산의 확대를 주도하는 지역인 동시에 인구 증가, 소득수준 향상, 식생활 변화 및 도시화 등을 배경으로 농식품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합적 성격의 시장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확대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2025년 K-Food+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농식품 수출액은 104.1억 달러로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²⁾ 이러한 수출 증가세는 한국 농식품이 해외시장에서 일정한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류의 확산과 함께 K-Food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농식품 시장의 성장과 수입수요의 증가는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수출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³⁾

다만 농산물 거래의 확대는 수출 가능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계약상 위험의 관리라는 법적 과제도 함께 제기한다. 농산물은 부패 가능성, 계절성, 품질 변동성 및 운송 중 손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보다 계약부적합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⁴⁾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하자 여부, 검사 시기 및 하자 통지의 적정성은 매수인의 구제권 행사와 매도인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된다.⁵⁾ 따라서 아시아 농산물 수출계약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ISG상 계약부적합과 검사·통지의 무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검사·통지의무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CISG상 일반 법리를 중심

1) OECD/FAO,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5-2034*, Paris/Rome: OECD Publishing/FAO, 32, 2025; FAO, *Trade of Agrifood Products: 2000-2024*, FAOSTAT Analytical Briefs No. 120, Rome: FAO, 2025.

2) 농림축산식품부, “수출 신기록 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2025년 136억 달러 돌파!”, 보도자료, 2026. 1. 1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527/artclView.do>(검색일: 2026. 7. 7.).

3) 김동환·김진우, 『K-Food 수출 확대 방안』, 농식품신유통연구원, 4, 10, 22, 26, 31-32면, 2025.

4)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 2: Examination of the Goods and Notice of Non-Conformity: Articles 38 and 39*, comments 3.1-3.4, 7 June 2004;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16 Edition*, art. 35, 2016.

5)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s. 35, 38, 39; *CISG-AC Opinion No. 2*, comments 4.1-4.8.

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 연구에서는 CISG 제38조와 제39조의 해석, 검사기간과 통지기간의 관계, 통지 내용의 구체성, 합리적 기간의 판단기준 및 관련 판례의 적용과 해석 등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다.⁶⁾ 국외 연구에서도 CISG상 계약부적합과 통지의무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제39조상 합리적 기간, 통지의 특정성,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구제권 상실 및 국가별 해석의 차이 등이 주요 논점으로 논의되어 왔다.⁷⁾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CISG상 검사·통지의무의 일반적 해석론이나 개별 판례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농산물 거래의 특수성과 국제거래의 실무적 환경을 결합하여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농산물 거래에서는 단순히 하자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하자의 발생 시점, 검사 가능 시기, 통지의 구체성 및 적시성이 분쟁의 핵심이 된다. 특히 장거리 운송과 냉장·냉동 유통이 결합되는 국제 농산물 거래에서는 일반 공산품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만으로 검사·통지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농산물 수출계약을 대상으로 CISG상 계약부적합과 검사·통지의무의 적용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CISG 제35조, 제38조 및 제39조의 법적 구조와 상호관계를 정리하고, 생체물, 부패 가능 식품, 가공식품 및 벌크 농산물 등 농식품 거래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유형별로 비교·분석한다. 특히 각 판례에서 물품의 특성, 운송 및 보관 상태, 검사 가능 시점, 통지 내용의 구체성 및 하자 발견 후 매수인의 대응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농산물 거래에 적용되는 특유의 판단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공산품 중심의 검사·통지의무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CISG상 검사·통지의무의 일반 법리를 농산물 매매계약의 실제 분쟁 구조와 연결하고,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계약에서 품질분쟁과 하자통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6) 정홍식,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수인의 검사의무와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국제거래법연구』, 제19권 제2호, 77-104면, 2011; 박은옥, “CISG상의 물품검사와 부적합 통지에 관한 판례연구”, 『통상법률』, 제96호, 141-172면, 2010; 김선옥, “물품검사 및 부적합 통지요건의 운용원리와 실무적 가치: CISG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45호, 30-54면, 2019.

7) CISG-AC Opinion No. 2, comments 3.1-4.8; UNCITRAL, CISG Digest (2016), arts. 35, 38, 39; Ferrari, F., “Diverg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CISG’s Rules on Non-Conformity of Goods”, *Recht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vol. 68, no. 3, 473-494, 2004; Andersen, C. B., “Article 39 of the CISG and Its ‘Noble Month’ for Notice-Giving: A (Gracefully) Ageing Doctrine?”,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30, no. 2, 185-202, 2012; De Luca, V.,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 in International Sale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7, no. 1, 163-257, 2015.

II. CISG상 계약부적합과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1. 계약부적합

CISG 제35조는 매도인이 인도하여야 할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종류 및 포장에 부합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부적합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일차적 판단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계약부적합은 물리적 하자에 한정되지 않는데 수량 부족, 품질 저하, 종류 불일치, 포장상 하자, 통상 사용목적 또는 특정 사용목적에 대한 부적합도 이에 포함된다.⁸⁾ CISG는 이를 한국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종류물 불일치 등으로 세분하기보다 인도된 물품이 계약상 요구되는 상태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⁹⁾

계약상 당사자 간 합의된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 통상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견본 또는 모형에 의한 거래에서는 품질이 제시된 견본이나 모형에 부합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방식 또는 물품의 보존·보호에 적합한 방식으로 포장되어야 한다.¹⁰⁾ CISG에서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있어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매도인의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물품의 계약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¹¹⁾ 이는 매수인이 이미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부적합을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계약부적합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물품의 부적합이 인도 후 발견되었더라도 그 원인이 위험 이전 시점에 존재하였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위험 이전 이후 매수인의 보관이나

8)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 19: Standards and 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Article 35 CISG*, paras. 3-4, 25 November 2018.

9) UNCITRAL, *CISG Digest (2016)*, art. 35.

1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35(2).

1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35(3).

취급으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¹²⁾ 이렇듯 물품의 계약부적합은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 및 부적합 통지의무와 연결되는데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적시에 검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CISG상 매수인의 구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는 매수인의 구제권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된다.¹³⁾

2. 물품검사와 통지의무

CISG는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8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한 후 실행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품검사의무는 계약부적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자, 제39조상 부적합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전제가 된다.¹⁴⁾ 검사기간은 고정된 기한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한 짧은 기간”이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데 이는 물품의 성질, 하자의 유형, 운송방식, 포장상태, 검사에 필요한 절차, 거래관행 및 당사자의 합의가 고려된다. 특히 부패 가능성이 크거나 품질 변화가 빠른 물품은 보다 신속한 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¹⁵⁾ 또한, 운송이 수반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의 검사시점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물품이 전송 또는 재송부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검사 기회가 없고 매도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새로운 목적지 도착 시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¹⁶⁾

물품의 검사방법에 대해서 CISG는 명시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매수인은 물품의 종류와 거래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물품을 검사하면 되는데 외관상의 하자는 수령 직후의 통상적 검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성분상의 하자, 내부결함, 위생·안전성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경우 물품의 적합성은 표본검사, 전문기관 검사,

1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36(1).

13) *CISG-AC Opinion No. 2*, comments 3.1-4.8.

1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38(1).

15) *CISG-AC Opinion No. 2*, comments 3.1-3.5.

1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s. 38(2)-38(3).

실험실 분석 또는 일정한 전문 검사과정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¹⁷⁾

물품의 검사기간에 이어 CISG는 물품의 부적합 통지 기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즉, 매수인의 물품 부적합 통지는 시간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시간적 요건인 합리적인 기간은 물품의 성질, 하자의 유형, 검사 가능성, 거래관행, 통신수단 및 구체적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된다.¹⁸⁾ 내용적 요건은 매수인의 통지 내용이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품질이 좋지 않다”거나 “물품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통지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매수인은 하자의 종류, 부적합한 물량, 발견 시점, 검사 결과 또는 구체적 증상을 매도인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야 한다.¹⁹⁾ 이는 CISG 제38조와 39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 또는 손해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²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는 독립적인 의무 규정이라기보다 부적합 통지의무와 결합하여 매수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의무이다. 매수인이 적시에 인도된 물품을 검사하지 않아 부적합 발견이나 통지가 지연되면 계약부적합을 주장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기에 제38조의 검사시기와 검사방법은 제39조의 통지기간과 내용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²¹⁾ CISG상 물품검사의무는 계약부적합 분쟁에서 하자의 발견 가능성과 통지의 적시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데 농산물처럼 품질이 시간, 온도, 습도, 운송 및 보관환경에 따라 쉽게 변동되는 물품에서는 적절한 검사시기와 검사방법이 이후 부적합 통지의 적정성 및 매수인의 구제권 행사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²²⁾

17) UNCITRAL, *CISG Digest* (2016), art. 38.

18) *CISG-AC Opinion No. 2*, comments 4.1-4.8.

19) *CISG-AC Opinion No. 2*, comments 4.2-4.3.

2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39(1).

21) *CISG-AC Opinion No. 2*, comments 3.1-4.8.

22) UNCITRAL, *CISG Digest* (2016), arts. 38-39.

III. CISG상 농산물 거래의 검사·통지의무에 관한 판례분석

1. Live sheep 사건²³⁾

독일의 매도인과 덴마크의 매수인 사이에 양 400마리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 계약은 전화로 체결된 구두계약이었고, 당사자 사이에 양의 수량과 가격, 인도장소 등에 관한 합의는 있었으나 인도될 양이 “즉시 도축 가능한 상태”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육을 전제로 한 양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서면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 후 매수인은 양이 충분히 살이 오르지 않았고 일부는 도축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물품부적합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주장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하였고, 매도인은 “즉시 도축 가능한 양”이라는 품질기준은 계약내용으로 합의된 바 없으며 자신은 계약에 맞는 양을 인도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결국 법원은 매도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도된 양이 계약에 부합한다고 보고 매도인의 대금청구를 인정하였다.²⁴⁾

이 사건의 당사자 주장 및 법적 쟁점은 첫째, 인도된 양이 계약상 요구되는 상태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매수인은 주문한 양이 “즉시 도축 가능한 상태”여야 하는데 실제 인도된 양은 그러하지 않아 계약부적합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반면, 매도인은 그러한 특정 품질이나 용도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설령 양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8조와 제39조가 요구하는 시기에 검사하고 통지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살아있는 양과 같은 생체물은 사료, 수분 공급, 운송 후 관리 등에 따라 단기간에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공산품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²⁵⁾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우선 “즉시 도축 가능한 양”이라는 점이 계약내용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전화계약 과정에서 양의 품종이나 중량 등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도될 양

23) Landgericht Flensburg, 19 January 2001, 4 O 369/99,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619; Oberlandesgericht Schleswig, 22 August 2002, 11 U 40/01,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710; *CISG-AC Opinion No. 2*.

24) Landgericht Flensburg, 19 January 2001, 4 O 369/99,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619.

25) Ibid.

이 곧바로 도축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구체적 품질기준까지 합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살아있는 가축은 인도 후 상태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인도 직후 상태를 확인하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하자를 통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²⁶⁾

판결의 핵심은 생체물 거래에서 제38조상 검사의무가 물품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실상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살아있는 양은 인도 후 일정 기간 보관 후 검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인도 당시의 상태 확인이 특히 중요하며 검사와 통지가 지체되면 책임관계가 불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수인이 하자를 적법하게 원용할 수 없다고 보고, 결국 매도인의 대금청구를 인정하였다.²⁷⁾

이 사건의 시사점은 첫째, 농산물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가축과 같은 생체물은 인도 후 상태 변화가 매우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 시기의 판단이 일반 식품이나 공산품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둘째, 이 사건은 제38조상 검사의무가 단순히 “빠른 검사”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물품의 성질상 가능한 경우 인도 직후의 즉시 검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생체물 거래에서는 검사 시기의 지체가 곧바로 하자의 귀속시점과 입증의 곤란으로 이어지므로 제38조와 제39조가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²⁸⁾

2. Chicago Prime 사건²⁹⁾

매도인인 미국의 육류도매상 Chicago Prime Packers와 매수인인 캐나다의 Northam Food Trading은 냉동 돼지갈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냉동창고에서

26) Ibid.; CISG-AC Opinion No. 2.

27) Landgericht Flensburg, 19 January 2001, 4 O 369/99,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619; Oberlandesgericht Schleswig, 22 August 2002, 11 U 40/01,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710.

28) Oberlandesgericht Schleswig, 22 August 2002, 11 U 40/01,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710; CISG-AC Opinion No. 2.

29)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28 May 2003, 01 C 4447,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796;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21 May 2004, 01 C 4447,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851;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 23 May 2005, 04-2551,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1026.

물품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인수 후 약 2주반이 지난 뒤 악취와 변질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해당 육류는 부패한 것으로 판정되어 전량 폐기되자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매도인이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³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인도된 냉동 돼지갈비가 위험이전 시점에 이미 계약부적합 상태였는지 여부, 둘째, 매수인이 CISG 제38조와 제39조가 요구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검사를 하고 통지하였는지 여부였다.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 당시부터 이미 부패 또는 변질 상태였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매도인은 인도 당시 물품은 계약에 적합하였고 설령 이후 문제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적시에 검사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합을 원용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결국 이 사건은 부적합 자체의 존재뿐 아니라 위험이전 시점의 상태에 대한 입증책임과 부패성 물품에 요구되는 신속한 검사·통지의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³¹⁾

양 당사자 간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부적합의 입증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즉,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려면, 인도된 갈비가 위험이전 시점에 이미 부적합 상태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갈비가 인도 당시 이미 부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수 후 운송·보관·처리 과정에서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매수인이 위험이전 시점의 부적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³²⁾

또한 법원은 제38조와 제39조의 측면에서도 매수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냉동 육류처럼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매수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했어야 할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보았다.³³⁾ 그러나 매수인은 인수 직후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제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은 적시 검사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역시 같은 입장에서 매수인이 부적합을 주장하려면 인도 당시의 부적합과 적

30) *Chicago Prime case*, Chicago Prime Case, CISG-online Nos. 796, 851, 1026.

31) *Chicago Prime case*, Chicago Prime Case, CISG-online Nos. 851, 1026.

32) Ibid.

33) Ibid.

시 검사·통지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³⁴⁾

결국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매수인에게 계약대금 178,200달러와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였다. 제7순회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냉동 육류의 부패 가능성만으로 인도 당시의 부적합이 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³⁵⁾ 따라서 매수인이 위험이전 시점의 부적합과 신속한 검사·통지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부적합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³⁶⁾

이 사건의 시사점은 첫째, 냉동육류와 같은 부패 가능 물품의 거래에서는 위험이전 시점의 상태를 둘러싼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히 사후적으로 부패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38조와 제39조가 요구하는 검사와 통지가 일반 공산품보다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부패 가능성이 있는 농축산물 거래에서는 물품 인도 후 즉시 검사, 검사기록 확보, 보관상태의 연속적 관리, 시료채취 및 재검사 가능성이 매수인의 구제권과 직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례는 부패성 식품 또는 축산물 거래에서 검사와 통지의무가 실체적 권리구제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시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³⁷⁾

3. Paprika powder 사건³⁸⁾

스페인의 매도인과 독일의 매수인은 파프리카 분말 및 파프리카 조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인도분마다 아플라톡신 및 살모넬라 불검출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일부 물품은 정상적으로 인도·결제되었으나 일부 인도분에 대해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이 독일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해당 인도분의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34) Ibid.

35) Ibid.

36) Ibid.

37)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21 May 2004, 01 C 4447,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851;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 23 May 2005, 04-2551,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1026; UNCITRAL, *CISG Digest* (2016), arts. 38, 39.

38) Landgericht Ellwangen, 21 August 1995, 1 KfH O 32/95, *Paprika Powder Case I*, CISG-online No. 279.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³⁹⁾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하자의 발견이 매수인의 단순 외관확인인 아니라 독일 향신료 산업협회의 통보를 계기로 매수인이 즉시 전문가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 ethylene oxide 흔적과 chlorine ethanol 검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반품, 손해배상, 대체물품 제공을 차례로 요구하였고, 결국 적합한 대체물품이 제공되지 않자 잔여 분할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⁴⁰⁾

당사자 주장과 법적 쟁점은 검사와 통지의 적시성에 집중되었다. 매수인은 파프리카가 독일 식품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ethylene oxide 또는 그 부산물에 오염되어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CISG 제35조상 계약부적합에 해당하며 이 하자는 외관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은닉하자이기 때문에 업계 통지를 받은 직후 전문가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가 확인되자 곧바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매도인은 오염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독일 외 국가의 판매자인 자신에게 독일 식품법상 특별 기준까지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다투었으며, 매수인의 검사 의뢰와 통지가 너무 늦어 제38조와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⁴¹⁾

독일 지방법원은 파프리카가 독일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독일 식품법상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잔류물질이 존재하면 통상적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분석자료와 당사자 간 서신을 종합하여 문제된 물품에 허용기준을 넘는 오염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매도인 측 대리인의 팩스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물품이 CISG 제35조상 계약부적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⁴²⁾

법원은 이 사건의 하자가 외관검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성분상 은닉하자라는 점을 전제로 검사와 통지의 적시성도 그 특성에 맞추어 판단하였다. 즉 파프리카 분말의 ethylene oxide 오염 여부는 업계 정보와 전문 분석을 거쳐야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인도 직후 특수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8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법원

39) Ibid.

40) Ibid.

41) Ibid.

42) Ibid.

은 매수인이 업계 통지를 받은 뒤 곧바로 전문가 검사를 의뢰하고 분석결과가 확인되자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한 점을 들어 제38조상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제39조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였다고 판단하였다.⁴³⁾

법원은 문제된 파프리카 분말이 ethylene oxide 오염으로 인해 독일 식품법상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독일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수인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다고 보아 이를 CISG 제25조상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대체물품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분할계약 전체 해제를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매수인의 손해배상 반소는 인정된 반면 매도인이 청구한 해당 인도분 대금은 인정되지 않았다.⁴⁴⁾

이 사건의 시사점은 첫째, 농산물 가공품 거래에서 하자가 성분상 은닉하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검사주체는 반드시 매수인 자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업계 협회, 독립 시험기관, 전문가와 같은 외부 전문주체가 실질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경우 제38조상 검사의무는 실제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 이후 어떤 전문적 검사절차를 밟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은 농산물에 관한 CISG 판례 중에서도 검사주체의 전문성, 은닉하자에 대한 성분분석,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를 전제로 한 적시 통지가 결합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⁴⁵⁾

4. German wine 사건⁴⁶⁾

이탈리아의 매도인은 독일의 매수인에게 백포도주와 로제 와인을 인도한 뒤 미지급된 잔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독일 당국 조사에서 인도된 와인에 약 9%의 물이 첨가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물량은 압류 후 폐기되자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와인의 계약적합성과 매수

43) Ibid.; CISG-AC Opinion No. 2.

44) Landgericht Ellwangen, 21 August 1995, 1 KfH O 32/95, *Paprika Powder Case I*, CISG-online No. 279.

45) Ibid.; UNCITRAL, *CISG Digest* (2016), arts. 35, 38, 39.

46) Landgericht Trier, 12 October 1995, 7 HO 78/95, *German Wine Case*, CISG-online No. 160.

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판단하였다.⁴⁷⁾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도된 와인이 CISG 제35조상 계약부적합에 해당하는지, 그 하자가 일반적인 검사로 발견 가능한 성질인지, 그리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알지 못할 수 없었다면 제40조에 따라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는지 여부였다. 매수인은 물이 첨가된 와인은 독일에서 적법하게 유통될 수 없어 통상적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8조가 요구하는 시기에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제39조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하자의 확인이 매수인의 통상적인 외관검사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조사와 전문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⁴⁸⁾

독일 지방법원은 인도된 와인에 약 9%의 물이 첨가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와인은 독일 시장에서 적법하게 유통될 수 없으므로 계약상 통상적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이 부적합이 인도 이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로 인도 다음 날 채취된 시료의 분석결과를 중시하였다.⁴⁹⁾ 물 첨가 여부는 외관이나 간이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고 화학적 분석과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실제로도 하자는 독일 당국의 조사와 전문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전제로 매수인에게 그러한 특수검사를 즉시 직접 수행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즉, 이 사건에서 실질적 검사주체는 매수인 자신이라기보다 공적 조사기관과 전문 분석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제38조상의 검사의무를 해석하였다.⁵⁰⁾

법원은 매수인이 제38조에 따른 검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았고, 매도인이 와인의 성분상 하자를 적어도 알지 못할 수 없었다고 보아 제40조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매도인은 제38조 및 제39조 위반을 항변할 수 없게 되었고, 매수인의 구제권은 유지되었다. 이 판결은 성분상 은닉하자가 문제되는 식품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외관확인만이 아니라 전문기관의 분석이 검사와 통지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⁵¹⁾

47) Ibid.

48) Ibid.

49) Ibid.

50) Ibid.

법원은 매도인의 잔여 대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매수인에게는 계약부적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된 와인의 가치, 압류에 따른 보관비용, 형사에 비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상당의 손해도 인정되었다. 즉, 이 사건은 대금지급 거절뿐 아니라 계약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사례이다.⁵²⁾

이 사건의 시사점은 첫째, 농산물이나 식품 거래에서는 하자의 성질에 따라 검사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은닉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일반적인 외관확인보다 전문 분석기관이나 공적 조사기관을 통한 검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CISG 제38조상의 검사의무는 언제나 매수인의 직접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특성과 하자의 발견 가능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검사 방식과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제39조상의 적시통지 여부 역시 단순히 인도일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 분석을 통해 하자가 확인된 시점과 그 이후 매수인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였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넷째, 이 사건은 농산물 관련 CISG 판례 중에서도 성분상 은닉하자, 전문기관에 의한 검사, 그리고 제40조의 보완기능이 결합된 사례로 평가된다.⁵³⁾

5. Hungarian wheat 사건⁵⁴⁾

헝가리의 매도인과 독일의 매수인은 헝가리산 밀 2,664.84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은 두 차례에 걸쳐 선적되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인도된 밀에 납·보미톡신 오염과 Hagberg Falling Number 기준 미달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⁵⁵⁾ 이에 매도인은 매매대금과 지체 인수로 인한 보관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51) Ibi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s. 38, 39, 40.

52) Landgericht Trier, 12 October 1995, 7 HO 78/95, *German Wine Case*, CISG-online No. 160.

53) Ibid.; UNCITRAL, *CISG Digest (2016)*, arts. 38-40.

54) Oberlandesgericht Karlsruhe, 8 February 2006, 7 U 1001/04,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1328; Landgericht Mannheim, 16 February 2004, 24 O 81/02,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3406.

55) Oberlandesgericht Karlsruhe, 8 February 2006, 7 U 1001/04,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1328. 여기서 납은 중금속 오염 여부, 보미톡신(vomitoxin, deoxynivalenol)은 곡물의 곰팡이독소 오염 여부, Hagberg falling number는 밀의 α -amylase 활성 및 제빵·가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품질지표로 문제되었다. See also ISO 3093:2009; Xu, Anqi et al., "Total deoxynivalenol contamination of wheat products and coarse grains in Shanghai, China: occurrence and health risk assessment", *Foods*, vol. 13, no. 21, 3373, 2024.

였다.⁵⁶⁾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벌크 상태의 곡물은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매수인은 검사결과를 근거로 납·보미톡신 오염과 Hagberg Falling Number 기준 미달을 주장한 반면, 매도인은 그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다투며 전체 물량의 계약부적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밀의 하자 존재 여부보다, 벌크 농산물의 샘플링·시험분석·시료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핵심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⁵⁷⁾

독일 고등법원(Karlsruhe)은 계약부적합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벌크 곡물 거래에서 품질문제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성 있는 시료 채취와 신뢰할 수 있는 시험방법에 의해 하자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매수인이 제출한 검사결과 자체뿐 아니라 그 시료가 전체 물량을 대표하는지와 채취·보존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도 함께 심사하였다.⁵⁸⁾

매수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법원은 납·보미톡신 오염이 계약상 부적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벌크 농산물 거래에서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시료가 어떤 절차로 채취·보존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며, 그 대표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과의 증명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벌크 농산물의 검사 방법을 전수검사가 아니라, 샘플링과 시험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보았다.⁵⁹⁾

Hagberg Falling Number 문제에서도 법원은 검사와 통지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매수인의 2001년 11월 14일 서신은 납과 보미톡신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을 뿐 Hagberg Falling Number 미달을 납·보미톡신 오염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부적합 사유로 특정한 통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⁶⁰⁾

결국 법원은 매수인이 주장한 납·보미톡신 오염, Hagberg Falling Number 미달 중 그 어

56)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1328.

57) Ibid.

58) Ibid.

59) Ibid.

60) Ibi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39(1).

는 것에 대해서도 계약부적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매도인의 대금청구와 보관비 청구를 인정하되 매수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벌크 곡물 거래에서 계약부적합의 입증에는 단순한 분석결과만이 아니라 샘플링의 대표성, 시료 보존의 적정성, 시험방법의 신뢰성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⁶¹⁾

이 사례의 시사점은 첫째, 곡물과 같은 벌크 농산물 거래에서는 전수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샘플링과 시험검사가 계약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 입증수단이 된다. 둘째, 시료의 채취, 봉인, 보존, 재검사 가능성은 단순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검사결과의 신뢰성과 증명력을 좌우하는 법적 요소이다. 셋째, 검사방법은 통지의무와도 긴밀히 연결되므로 분석을 통해 확인된 하자는 그 내용과 성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매도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CISG상 벌크 농산물 거래에서 검사방법, 입증구조, 통지의 특정성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⁶²⁾

6. Fallini cheese 사건⁶³⁾

이탈리아의 매도인과 네덜란드의 매수인 사이에 치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도인은 인도 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치즈가 계약상 요구되는 품질에 미달하므로 대금을 감액하고 손해배상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⁶⁴⁾ 매도인은 물품이 계약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적법한 시기와 방식으로 검사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원용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도된 치즈에 계약부적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적합에 대해 매수인이 CISG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치즈를 적시에 검사하고 부적합을 적시에 통지하였는지 여부였는데, 결국 이 사건은 치즈 거래에서의 부적합 자체의 존부보다

61) Oberlandesgericht Karlsruhe, 8 February 2006, 7 U 1001/04,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1328.

62) Oberlandesgericht Karlsruhe, 8 February 2006, 7 U 1001/04,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1328; UNCITRAL, CLOUT Case No. 721.

63) Rechtbank Roermond, 19 December 1991, 900336, *Fallini Stefano & Co. S.N.C. v. Fordic B.V.*, CISG-online No. 29.

64) Rechtbank Roermond, 19 December 1991, 900336, *Fallini Stefano & Co. S.N.C. v. Fordic B.V.*, CISG-online No. 29; UNCITRAL, CLOUT Case No. 98.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이행이 구제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⁶⁵⁾

네델란드 지방법원(Roermond)은 검사시기에 대하여 제39조 제1항의 “합리적인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의 성질, 당사자의 전문성, 물품의 종류, 부패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의 치즈는 비교적 보존성이 있는 식품으로 보아 부패성 물품처럼 극히 짧은 기간 내의 검사·통지가 요구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매수인이 제38조와 제39조가 요구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검사와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수인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⁶⁶⁾

이 판결의 핵심은 제38조와 제39조의 적용 기준이 물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법원은 치즈를 고도의 부패성 물품으로 보지는 않아 검사와 통지에 대해 극히 엄격한 단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즈도 식품인 이상 품질문제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확인되고 통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매수인에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신속성과 구체성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비교적 보존성이 있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적시성과 특정성이 권리보전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⁶⁷⁾

이 사건의 시사점은 첫째, 농산물이나 식품 거래에서 검사 및 통지의무의 강도는 물품의 보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체물이나 신선 농산물에 비해 치즈와 같은 비교적 보존성이 있는 식품은 검사와 통지 기간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무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식품 거래에서도 매수인이 계약부적합을 원용하려면 단순한 불만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8조와 제39조가 요구하는 검사와 통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은 농산물 및 식품 거래 내부에서도 물품의 성질에 따라 검사 및 통지의무의 작동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체물, 부패성 식품, 보존성이 있는 식품, 벌크 농산물은 같은 범주에 속하더라도 제38조와 제39조의 적용 강도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⁶⁸⁾

65) Rechtbank Roermond, 19 December 1991, 900336, *Fallini Stefano & Co. S.N.C. v. Fordic B.V.*, CISG-online No. 29.

66) Ibid.; UNCITRAL, *CISG Digest* (2016), art. 39.

67) Rechtbank Roermond, 19 December 1991, 900336, *Fallini Stefano & Co. S.N.C. v. Fordic B.V.*, CISG-online No. 29; *CISG-AC Opinion* No. 2.

IV. 농산물 수출입계약에 대한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판례들은 농산물 거래에서 CISG 제38조와 제39조가 단순한 절차규정이 아니라 계약부적합 주장과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생체물, 부패성 식품, 가공식품, 벌크 곡물, 일반 식품과 같이 물품의 유형이 달라지면 검사시기, 검사주체, 검사방법, 통지내용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농산물 거래에서 검사 및 통지의무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물품의 자연적 성질과 유통구조뿐 아니라 상태변화 가능성, 하자의 발견 가능성, 검사방법 및 증거의 신뢰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⁶⁹⁾

1. 계약부적합 판단의 유형화

CISG 제35조상 계약부적합은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종류, 포장 또는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그러나 농산물 및 식품 거래에서는 계약부적합 판단이 단순히 물품의 외형적 상태나 사후적 하자 발견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물품의 성질, 운송·보관환경, 하자의 발견 가능성, 위험이전 시점의 상태, 검사방법의 신뢰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장에서 검토한 판례들은 농산물 거래에서 계약부적합 판단이 물품유형에 따라 달리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⁷⁰⁾

첫째, 생체물 거래에서는 인도 당시의 상태와 계약상 품질 약정의 존재가 핵심이 된다. Live sheep 사건에서 매수인은 인도된 양이 즉시 도축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품질 또는 용도가 계약 내용으로 충분히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살아있는 가축은 인도 후 사료, 수분 공급, 운송 후 관리 등에 따라 상태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존재 여부는 인도 직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 유형에서는 계약부적합 판단이 물품의 객관적 상태뿐 아니라 특정 품질기준이 계약상 명확히 합의되었는지와 인도 당시 상태가 적시에 확인되었는지에 좌우된다.⁷¹⁾

68) Rechtbank Roermond, 19 December 1991, 900336, *Fallini Stefano & Co. S.N.C. v. Fordic B.V.*, CISG-online No. 29; UNCITRAL, CLOUT Case No. 98; *CISG-AC Opinion No. 2*.

69) *CISG-AC Opinion No. 2*; UNCITRAL, *CISG Digest (2016)*, arts. 38-39.

7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35.

둘째, 부패 가능 식품 거래에서는 사후적 부패 사실만으로 위험이전 시점의 계약부적합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Chicago Prime* 사건에서 냉동 돼지갈비가 인수 후 부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법원은 그 부패가 위험이전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는지를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냉동육류와 같은 부패 가능 물품은 운송, 보관, 온도관리, 취급 과정에 따라 품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부적합 판단은 단순한 결과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위험이전 시점의 상태와 이후 보관·운송 과정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⁷²⁾

셋째, 성분상 은닉하자가 문제되는 식품 거래에서는 외관상 하자보다 전문검사결과와 식품안전기준이 계약부적합 판단의 중심이 된다. *Paprika powder* 사건에서는 파프리카 분말의 잔류물질 오염 여부가 문제되었고 법원은 독일 식품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이 존재하는 경우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German wine* 사건에서도 물이 첨가된 와인은 독일 시장에서 적법하게 유통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약부적합이 인정되었다. 이 유형에서는 하자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문기관의 분석결과와 수입국의 식품안전기준이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이 된다.⁷³⁾

넷째, 벌크 농산물 거래에서는 전체 물량의 부적합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시료 채취와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Hungarian wheat* 사건에서 매수인은 밀의 낱·보미 특신 오염, *Hagberg Falling Number* 기준 미달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검사결과만으로 전체 물량의 계약부적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벌크 농산물은 전수검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계약부적합 판단은 개별 검사결과의 존재만이 아니라 시료의 채취, 봉인, 보존, 재검사 가능성, 시험방법의 객관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⁷⁴⁾

다섯째, 비교적 보존성이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부패성 물품과 동일한 수준의 즉시성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식품이라는 성질상 일정한 신속성과 구체성은 여전히 필요하다. *Fallini cheese* 사건에서 법원은 치즈를 생체물이나 고도의 부패성 물품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았으나 매수인이 계약부적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검사와 통지의

71)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619, 710.

72)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851, 1026.

73) *Paprika Powder Case I*, CISG-online No. 279; *German Wine Case*, CISG-online No. 160.

74)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1328; UNCITRAL, CLOUT Case No. 721.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농산물 및 식품 거래에서 물품의 보존성에 따라 계약부적합 판단과 검사·통지의 강도가 차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⁷⁵⁾

이상의 판례를 종합하면, 농산물 거래에서 계약부적합 판단은 하나의 단일 기준으로 환원되기 어렵다. 생체물은 인도 직후 상태와 특정 품질 약정이, 부패 가능 식품은 위험이전 시점과 보관·운송의 연속성이, 성분상 은닉하자는 전문분석과 규제기준이, 벌크 농산물은 샘플링의 대표성과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보존성 식품은 물품의 성질에 비례한 검사·통지의 적정성이 각각 핵심 판단요소가 된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계약에서 CISG상 계약부적합을 판단할 때에는 제35조의 일반 법리를 전제로 하되 물품유형별 특성과 하자의 발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유형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2. 검사기준의 차등화

CISG 제38조는 매수인이 물품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검사할 의무를 규정하지만 그 기간과 방법이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제3장의 판례분석은 농산물 및 식품 거래에서 검사기준이 물품의 성질과 하자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농산물 거래에서 물품검사의무는 단순한 “신속한 검사”로 설명되기 어렵고 생체물, 부패 가능 식품, 성분상 은닉하자, 벌크 농산물, 보존성 식품이라는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체화된다.⁷⁶⁾

첫째, 생체물 거래에서는 사실상 즉시검사가 요구된다. Live sheep 사건에서 법원은 살아있는 양의 상태가 인도 후 사료, 수분 공급, 운송 후 관리 등에 따라 단기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생체물의 하자 여부는 인도 직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검사가 지체되면 하자의 발생 시점과 책임 귀속이 불명확해진다. 이 유형에서 제38조상 검사의무는 일반적인 신속검사를 넘어 물품의 성질상 가능한 경우 인도 직후 상태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⁷⁷⁾

둘째, 부패 가능 식품에서는 신속한 검사와 보관상태의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다. Chicago

75) *Fallini Case*, CISG-online No. 29; UNCITRAL, CLOUT Case No. 98.

7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38.

77)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619, 710.

Prime 사건에서 냉동 돼지갈비는 인수 후 부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법원은 그 부패가 위험이전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는지를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부패성 식품의 경우 사후적 변질 사실만으로 계약부적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 당시의 상태와 이후 운송 및 보관 과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물품 수령 직후 검사, 온도관리 기록, 보관상태 확인, 시료채취 등이 검사방법의 핵심이 된다.⁷⁸⁾

셋째, 성분상 은닉하자는 전문기관 검사가 실질적인 검사방법으로 기능한다. Paprika powder 사건과 German wine 사건은 모두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식품 성분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례이다. 파프리카 분말의 잔류물질 오염이나 와인의 물 첨가 여부는 통상적 외관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전문 분석이나 공적 조사기관의 검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서는 인도 직후 특수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검사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수인이 하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와 그 이후 전문검사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였는지가 중요하다.⁷⁹⁾

넷째, 벌크 농산물에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링과 검사절차의 신뢰성이 검사기준의 중심이 된다. Hungarian wheat 사건에서 법원은 밀의 오염 여부나 품질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면서 단순한 분석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시료가 전체 물량을 대표하는지의 여부와 채취·봉인·보존 과정의 적절성, 시험방법의 신뢰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벌크 농산물은 전수검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검사기준은 개별 하자의 확인보다 샘플링의 대표성, 시료의 연속성, 재검사 가능성, 시험기관의 객관성에 의해 구체화된다.⁸⁰⁾

다섯째, 보존성 식품에서는 검사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신속성과 구체성의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Fallini cheese 사건에서 법원은 치즈를 생체물이나 고도의 부패성 식품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식품인 이상 품질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확인되고 통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농산물 및 식품 거래에서도 보존 가능성에 따라 검사기간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보존성 식품의 경우 즉시 검사까지 요구되지는 않더라도 매수인이 장기간 검사를 지연한 뒤 계약부적합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⁸¹⁾

78)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851, 1026.

79) *Paprika Powder Case I*, CISG-online No. 279; *German Wine Case*, CISG-online No. 160.

80)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1328; UNCITRAL, CLOUT Case No. 721.

81) *Fallini Case*, CISG-online No. 29; UNCITRAL, CLOUT Case No. 98.

이러한 판례의 비교는 제38조상 검사시기와 방법이 물품의 성질, 상태변화 가능성 및 하자의 발견 가능성에 따라 달리 구체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형화는 제38조의 “실행가능한 한 짧은 기간”이라는 추상적 기준을 농산물 거래의 실제 분쟁구조에 맞게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계약에서는 물품검사의무를 일률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물품의 성질에 맞는 검사시기와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생체물이나 신선 농산물은 인도 직후 검사 및 상태확인 절차를 명시하고, 냉장·냉동식품은 온도기록과 보관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분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는 가공식품은 전문검사기관과 분석기준을 정하고 곡물 등 벌크 농산물은 샘플링 방식, 시료보존, 재검사 절차를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검사기준의 차등화는 농산물 수출계약에서 계약부적합 분쟁을 예방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핵심적 장치가 된다.

3. 통지요건의 구체화

CISG 제39조는 매수인이 계약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제3장의 판례들은 농산물 및 식품 거래에서 통지의무가 단순한 이의제기나 불만 표시로 충족되지 않으며 물품의 특성, 하자의 유형, 검사방법, 영향을 받은 물량, 하자 발견 경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농산물 거래에서 통지요건은 ‘신속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화된다.⁸²⁾

첫째, 생체물 거래에서는 통지의 즉시성이 특히 강조된다. *Live sheep* 사건에서 법원은 살아있는 양의 상태가 인도 후 사료, 수분 공급, 운송 후 관리 등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물품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가 인도 당시 존재하였는지, 또는 인도 후 관리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체물 거래에서 매수인의 통지는 단순히 빠른 수준을 넘어 인도 직후 확인된 상태를 기초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⁸³⁾

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39.

83)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619, 710.

둘째, 부패 가능 식품에서는 통지의 신속성과 함께 보관상태에 관한 설명이 중요하다. Chicago Prime 사건에서 냉동 돼지갈비가 인수 후 부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법원은 사후적 부패 사실만으로 위험이전 시점의 계약부적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유형에서 매수인은 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품 수령 시점, 온도관리 상태, 보관조건, 부패 발견 시점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품의 하자 원인이 인도 전 단계에 있었는지, 운송 또는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⁸⁴⁾

셋째, 성분상 은닉하자에서는 통지의 기산점과 내용이 전문검사 결과와 연결된다. Paprika powder 사건과 German wine 사건에서는 잔류물질 오염이나 물 첨가 여부가 외관상 확인될 수 없었고 전문기관의 분석 또는 공적 조사기관의 검사를 통해 하자가 확인되었다. 이때 통지의 적시성은 단순히 인도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매수인이 하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와 전문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의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 또한 통지 내용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검출 수치, 적용된 식품안전기준, 검사기관 및 분석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⁸⁵⁾

넷째, 벌크 농산물에서는 통지의 특정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Hungarian wheat 사건에서 매수인은 납·보미톡신 오염, Hagberg Falling Number 기준 미달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통지 내용에 있어 부적합 사유를 개별적으로 충분히 특정하였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특정 하자에 관한 통지가 다른 하자에 관한 통지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벌크 농산물 거래에서 통지는 문제가 되는 품질항목, 영향을 받는 물량, 시료채취 방식, 검사결과, 기준 미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⁸⁶⁾

다섯째, 보존성 식품에서도 통지의무는 완화될 수 있을 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Fallini cheese 사건에서 법원은 치즈를 고도의 부패성 식품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매수인이 계약부적합을 주장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하자를 확인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비교적 보존성이 있는 식품이라도 장기간 경과 후의 추상적 문제 제기는 제39조상 통지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존성 식품에서는 생체물이나 냉동육류보다 시간적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뿐 통지의 구체성은 여전히 요구된다.⁸⁷⁾

84)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851, 1026.

85) *Paprika Powder Case I*, CISG-online No. 279; *German Wine Case*, CISG-online No. 160.

86)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1328; UNCITRAL, CLOUT Case No. 721.

통지의무 역시 물품의 성질과 하자의 발견 방식에 따라 적시성과 특정성의 정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거래에서는 검사결과와 하자의 성질을 반영하여 통지시기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입계약에서는 통지조항을 단순히 “계약부적합 발견 후 합리적 기간 내 통지”라고 정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계약 단계에서 하자 통지의 기한, 통지방식, 필수 기재사항, 사진·검사보고서·온도기록 등 증빙자료, 시료보존 및 재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물은 물품의 상태가 시간과 보관환경에 따라 쉽게 변동되므로 통지요건의 구체화는 계약부적합 분쟁에서 매수인의 권리보전과 매도인의 방어권 보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가 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농산물 수출계약에서 CISG상 계약부적합과 검사·통지의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농산물은 시간의 경과, 운송·보관환경, 성분상 안전성, 시료의 대표성 등에 따라 계약적합성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CISG 제35조와 제38조, 제39조를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연계성이 중요하다.

판례분석을 종합하면 농산물 거래에서 검사·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품의 보존성, 하자의 발견 가능성, 위험이전 이후의 상태변화 가능성, 검사방법 및 증거의 신뢰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부적합 분쟁은 단순히 하자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하자의 발생 시점과 관리영역,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뢰성을 함께 검토하는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언제 발생하였고 어느 단계의 관리영역에 속하며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사후적 하자 주장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단계부터 품질기준, 검사절차, 통지방식, 보관·운송기록, 증거확보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농산물 수출계약 실무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기업은 계약상 품질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품종, 등급, 크기, 색상, 당도, 수분함량, 잔류농약, 미생물 기준, 포장상태, 유통기한 등에 따라 계약적합성 판단이 달라

87) *Fallini Case*, CISG-online No. 29; UNCITRAL, CLOUT Case No. 98.

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양호한 품질’, ‘수출 적합품’과 같은 포괄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규격, 허용오차, 검사기준, 적용되는 수입국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선적 전 품질확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농산물은 인도 후 상태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은 선적 전 검사보고서, 사진, 동영상, 포장상태 기록, 온도기록, 시료보관 자료 등 ‘선적 당시 물품이 적합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한다. 특히 냉장·냉동 농식품의 경우에는 선적 전 온도, 컨테이너 예냉 여부, 적입 당시 상태, 봉인번호, 운송장비 정보를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수인의 물품수령 후 검사·통지의무를 계약상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CISG는 매수인에게 물품검사와 부적합 통지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합리적인 기간”이나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한 통지”의 의미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계약에서는 수령 후 검사기한, 통지기한, 통지방법,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매수인이 하자를 주장하려면 수령일, 검사일, 하자 발견일, 영향을 받은 수량, 사진, 검사보고서, 보관상태, 온도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는 매수인의 추상적 불만 제기나 일방적 대금지급 거절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넷째, 수입국 도착 후 보관·취급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산물은 매수인의 창고 보관, 소매 유통, 재포장, 해동, 장기 보관 과정에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물품 수령 이후 매수인이 준수해야 할 보관온도, 습도, 환기, 적재방식, 재판매 전 검사, 폐기 전 통지의무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냉장·냉동 식품의 경우 도착 후 온도이탈이 발생하면 하자의 원인이 수출기업의 이행단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매수인의 보관단계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의 보관기록 제출의무를 계약에 명시해 두면 수출기업의 책임범위를 방어하는 데 유리하다.

다섯째, 전문검사와 재검사 절차를 수출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해야 한다. 성분상 은닉 하자의 경우 잔류물질, 첨가물, 성분상 하자는 외관으로 확인되지 않고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검사결과만으로 분쟁이 진행되면 수출기업은 방어에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공인검사기관, 검사방법, 적용기준, 시료채취 방식, 시료보존기간, 재검사 요청권, 공동검사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

료가 보존되지 않거나 재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거가치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계약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벌크 농산물 거래에서는 샘플링 절차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 벌크 농산물의 경우 단순한 검사결과보다 시료의 대표성, 채취·봉인·보존 절차, 시험방법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곡물, 사료, 원료 농산물처럼 대량으로 거래되는 품목에서는 전체 물량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채취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매수인의 하자 주장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계약서에 샘플링 기준, 검사기관, 봉인 방식, 보관기간, 재검사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하자 발생 후 수출기업의 확인권과 치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매수인이 하자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물품을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면 수출기업은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서에 매수인이 폐기, 반품, 재판매 또는 대체구매를 하기 전에 수출기업에게 통지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현장확인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수인의 손해확대 방지 의무와도 연결되며 수출기업이 대체공급, 가격조정, 일부 보상 등 분쟁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덟째, 국내 수출지원제도를 계약관리와 연결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수출업체와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비용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출기업이 선적 전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고 사후 분쟁에서 품질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⁸⁸⁾ 또한, 농식품 수출 물류컨설팅이나 콜드체인 관련 지원사업은 냉장·냉동 농산물의 운송관리와 증빙자료 확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⁸⁹⁾

8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2025;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aT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 2025. 2. 25.,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05195(검색일: 2026. 7. 7.).

89)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해외진출컨설팅(물류효율화형) 지원업체 연장 모집 공고”, 공고, 2024. 3. 28.,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96288(검색일: 2026. 7. 7.); 한국무역협회, “aT, 콜드체인 물류 지원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박차”, 2021. 9. 24.,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5107&recommendId=0> (검색일: 2026. 7. 7.).

결국 농산물 수출기업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품질기준과 검사·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선적·인도 단계에서는 물품의 적합성과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며 하자 발생 후에는 재검사·공동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CISG상 검사·통지의무를 사후적인 분쟁대응 기준에 그치지 않고 계약상 위험관리 장치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동환·김진우, 『K-Food 수출 확대 방안』,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25.
- 김선옥, “물품검사 및 부적합 통지요건의 운용원리와 실무적 가치: CISG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45호, 30-54면, 2019.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 신기록 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2025년 136억 달러 돌파!”, 보도자료, 2026. 1. 1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527/artclView.do>(검색일: 2026. 7. 7.).
- 박은옥, “CISG상의 물품검사와 부적합 통지에 관한 판례연구”, 『통상법률』, 제96호, 141-172면, 2010.
- 정홍식,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수인의 검사의무와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국제거래법연구』, 제19권 제2호, 77-104면, 2011.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해외진출컨설팅(물류효율화형) 지원업체 연장 모집 공고”, 공고, 2024. 3. 28.,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96288
(검색일: 2026. 7. 7.).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aT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5. 2. 25.,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05195(검색일: 2026. 7. 7.).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5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5.
- 한국무역협회, “aT, 콜드체인 물류 지원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박차”, 2021. 9. 24.,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5107&recommendId=0>(검색일: 2026. 7. 7.).

- Andersen, Camilla B., “Article 39 of the CISG and Its ‘Noble Month’ for Notice-Giving: A (Gracefully) Ageing Doctrine?”,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30, no. 2, 185-202, 2012.
-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 2: Examination of the Goods and Notice of Non-Conformity: Articles 38 and 39*, 7 June 2004.
-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 19: Standards and 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Article 35 CISG*, 25 November 2018.
- De Luca, Villy,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 in International Sale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7, no. 1, 163-257, 2015.
- FAO, *Trade of Agrifood Products: 2000-2024*, FAOSTAT Analytical Briefs No. 120, Rome: FAO, 2025.
- Ferrari, Franco, “Diverg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CISG’s Rules on Non-Conformity of Goods”, *Re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vol. 68, no. 3, 473-494, 2004.
- ISO, *ISO 3093:2009 Wheat, Rye and Their Flours, Durum Wheat and Durum Wheat Semolina—Determination of the Falling Number According to Hagberg-Perten*,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9.
- OECD/FAO,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5-2034*, Paris/Rome: OECD Publishing/FAO, 2025.
-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16 Edition*, New York: United Nations, 2016.
-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 Xu, Anqi, Shenghao Yu, Yiqi Li, Hong Liu, Zheng Yan, Aibo Wu, Shaojie Peng and Na Liu, “Total Deoxynivalenol Contamination of Wheat Products and Coarse Grains in

Shanghai, China: Occurrence and Health Risk Assessment”, *Foods*, vol. 13, no. 21, 3373, 2024.

Landgericht Ellwangen, 21 August 1995, 1 KfH O 32/95, *Paprika Powder Case I*, CISG-online No. 279.

Landgericht Flensburg, 19 January 2001, 4 O 369/99,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619.

Landgericht Mannheim, 16 February 2004, 24 O 81/02,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3406.

Landgericht Trier, 12 October 1995, 7 HO 78/95, *German Wine Case*, CISG-online No. 160.

Oberlandesgericht Karlsruhe, 8 February 2006, 7 U 1001/04, *Hungarian Wheat Case*, CISG-online No. 1328, CLOUT Case No. 721.

Oberlandesgericht Schleswig, 22 August 2002, 11 U 40/01, *Live Sheep Case*, CISG-online No. 710.

Rechtbank Roermond, 19 December 1991, 900336, *Fallini Stefano & Co. S.N.C. v. Fordic B.V.*, CISG-online No. 29, CLOUT Case No. 98.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 23 May 2005, 04-2551,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1026.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28 May 2003, 01 C 4447,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796.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21 May 2004, 01 C 4447,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CISG-online No. 851.

[국문초록]

농산물 수출계약에서의 CISG상 계약부적합 및
검사·통지의무에 관한 연구

박은옥·김시라·석준호

농산물은 시간의 경과와 운송·보관 환경에 따라 품질이 쉽게 변화하고, 외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성분상 하자나 전체 물량의 대표성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농산물 국제매매에서 계약부적합 여부는 단순히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하자가 위험이전 당시 존재하였는지, 매수인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적시에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CISG상 검사·통지의무의 일반적 해석이나 개별 판례의 분석에 집중하여, 농산물의 유형과 유통 특성에 따른 판단기준의 차이를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CISG 제35조의 물품 계약적합성과 제38조 및 제39조의 검사·통지의무가 농산물 수출계약에서 어떻게 연계되어 적용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생체물, 부패 가능 식품, 성분상 은닉하자가 있는 가공식품, 벌크 농산물 및 비교적 보존성이 높은 식품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생체물에는 인도 직후의 상태 확인과 신속한 통지가 요구되는 반면, 부패 가능 식품에서는 위험이전 시점의 상태와 냉장·보관 과정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성분상 은닉하자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분석과 수입국의 안전기준이 계약부적합 판단의 핵심으로 작용하였으며, 벌크 농산물에서는 시료채취의 대표성, 보존 절차 및 재검사 가능성이 검사결과의 증명력을 좌우하였다. 보존성이 있는 식품은 즉시검사의 요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자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CISG상 검사·통지의무가 일률적인 기간 기준이 아니라 물품의 변질 가능성, 하자의 발견 방식, 운송·보관 과정 및 증거의 신뢰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농산물의 계약부적합 분쟁은 하자의 존재만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하자의 발생 시점과 관리영역을 추적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반 공산품 거래와 구별된다. 또한 검사와 통지는 서로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계

약부적합의 발견, 책임 귀속 및 구제권 보전을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품질과 안전성 기준, 검사 시기와 방법, 통지기한과 필수 기재사항, 온도·보관 기록, 시료의 채취·봉인·보존 및 재검사 절차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하자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보다 계약 체결과 이행 단계에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구제권 보전에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농산물 거래의 특성을 기준으로 CISG 제35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적용관계를 유형화하고, 이를 계약조항과 증거관리 체계로 연결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기업의 품질분쟁 예방과 법적 위험관리에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주제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계약부적합, 농산물 수출계약, 물품검사의무, 부적합 통지의무, 농식품 거래, 은닉하자, 증거관리

[Abstract]

A Study on Non-Conformity of the Goods and the Buyer's Duties of Examination and Notice under the CISG in Export Contracts for Agricultural Products

Eunok Park·Sira Kim·Jun Ho Seok

Agricultural products are highly vulnerable to deterioration during transportation and storage, and some defects cannot be detected through ordinary visual inspection. In international sales, non-conformity must therefore be assessed not only by the existence of a defect, but also by whether it existed at the time of the passing of risk, when the buyer could reasonably have discovered it, and whether timely and sufficiently specific notice was give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formity requirements under Article 35 and the buyer's duties of examination and notice under Articles 38 and 39 of the CISG in export contracts for agricultural products. It compares cases involving live animals, perishable food, processed food with latent compositional defects, bulk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relatively storable food products.

The analysis shows that applicable standards vary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goods and the type of defect. Live animals require examination immediately after delivery, while perishable food disputes depend largely on proof of the goods' condition at the time of the passing of risk and the continuity of refrigerated transportation and storage. In cases involving latent compositional defects, expert analysis and the food safety standards of the importing country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bulk agricultural commodities, the reliability of inspection results depends on representative sampling, proper sample preservation, and the possibility of retesting. More storable products may allow a longer examination period, but the buyer must still specify the non-conformity and notify the seller within a reasonable tim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duties of examination and notice should be assessed in light of perishability, detectability, transportation and storage conditions, and evidentiary reli-

ability rather than by a uniform time standard. Agricultural disputes are distinctive because they often require the parties to trace the time and cause of deterioration and identify which party controlled the goods when the defect arose.

Accordingly, export contracts should clearly provide for quality and safety standards, inspection procedures, notice periods, storage records, sampling, sample preservation, and retesting. By categoriz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s 35, 38, and 39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offers practical guidance for preventing quality disputes and managing legal risks in agricultural export transactions.

Keywor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non-conformity of goods, agricultural export contracts, duty of examination, notice of non-conformity, agricultural trade, latent defects, evidence management